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6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2015.11.19.)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휴양콘도미니엄을 등록하는 경우에 미취사 객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지역 내 휴양콘도미니엄 등록 시 미취사객실 설치허용기준 신설(안 제11조) :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미취사 객실 설치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및 별표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6.9.21.~10.12)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사항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휴양콘도미니엄 미취사객실 설치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휴양콘도미니엄 미취사객실 설치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